금융위원회

의결 제2026-56호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제재대상	내용(회사명, 성명 등)
前 이사장	(부산)사상신용협동조합 ◎◎◎

2. 조치내용

□ 임원에 대한 조치

◦ 「신용협동조합법」상 '직무 관련 금품 수수(약속) 금지 의무 위반', '임직원 대출 취급 제한 위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 계상', '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개선(改選 상당)"으로 조치

3. 조치이유(지적사항)

가. 직무 관련 금품 수수(약속) 금지 의무 위반

□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등에 의하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贈與)나 그 밖의 수뢰(受賂)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는데도

◦ (부산)사상신용협동조합(이하 "사상신협"이라 함)의 임원(前 이사장 ◎◎◎)은 아래와 같이 대출 편의 등 대가로 금품 수수를 약속하였고, 직원(前 전무 △△△)이 업무용 부동산 고가 매입을 전제로 금품을 수수한 건에 대하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⑴ 대출 취급 관련 금품 수수 약속 등 (행위자 책임)

□ (부산)사상신용협동조합 前 이사장 ◎◎◎는 20xx.xx.xx.~20xx.xx.xx. 기간 중 평소 친분이 있던 조합원 ◇◇◇*의 보수동 개발사업**에 본인과 ▲▲▲(◎◎◎ 지인), ▼▼▼(◎◎◎의 처)의 계좌를 이용하여 x억원을 투자하면서,

* 사상신협 직원들이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은 사상신협의 차주 ㈜A종합건설의 대표로서 ◎◎◎ 前 이사장과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확인됨

** xx시 xx구 xx동x가 xxx-x 등 일대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사업으로, B건설㈜가 사상신협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오피스텔 건물의 상가 3개층(1~3층) 면적은 421평이고, 예상 분양가는 xx억원임

◦ ◇◇◇이 사실상 대표로 있는 B건설㈜*의 보수동 개발사업 성공시 오피스텔 1층에 위치한 40평 상당의 상가(평당 xx백만원 상당의 상가를 평당 xx백만원 상당으로 분양받기로 함) 및 투자금(x억원)에 대한 xx% 수익금(x억 xx백만원)을 수수하기로 ◇◇◇과 약속한 후

* 대출취급일 직전에 설립(2020.1.30.)한 페이퍼컴퍼니로 대표이사 ▽▽▽(◇◇◇의 자)가 B건설㈜의 대표로 등기되어 있으나, ◎◎◎ 및 사상신협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실제 대표는 ◇◇◇인 것으로 확인됨

◦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B건설㈜ 명의로 보수동 개발사업 관련 토지 매입비 명목 등 시설자금 대출 총 x건, x억 xx백만원을 취급하는 등 대출 편의를 제공하였음

⑵ 업무용 부동산 고가 매입 관련 금품 수수 (감독자 책임)

□ 사상신협(당시 이사장 ◎◎◎)은 영업장(xx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매입을 담당하는 직원(前 전무 △△△)이 해당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

* xx시 xx구 xx동 xxx-x에 소재한 토지(xx.xm2, 약 xx평)

※ 前 전무 △△△은 차주 ●●●(△△△ 지인)가 20xx.xx.xx. 사상신협 대출을 통해 xx억 xx백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감정평가*도 하지 않고 ●●●로부터 고가(xx억 xx백만원)에 매입하는 계약 체결(20xx.xx.xx) 후, 동 인으로부터 수표 x억 xx백만원을 수수(20xx.xx.xx)하였음

* 내규「자산관리규정」제7조에 의하면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 취득시 시가감정서 또는 감정평가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하여야 함

※ 20xx.xx.xx. 유형자산 재평가시 상기 토지에서 재평가손실 x억 xx백만원(장부가액 x억 xx백만원→재평가액 x억 xx백만원)이 발생되어 사상신협에 거액의 손실을 초래

□ 前 이사장 ◎◎◎는 前 전무 △△△의 직상위자로서 업무용 부동산 매입에 대한 전결권한을 가진 자이며, 상기 토지 매입시 감정평가가 없었는데도 토지매입을 승인하는 등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음

나. 임직원 대출 취급 제한 위반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4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 다만,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음

◦ 사상신협(당시 이사장 ◎◎◎)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前 이사장 ◎◎◎에 대하여 조카(♠♠♠)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 소유 토지를 담보로 보통대출 x건, x억 xx백만원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 ◎◎◎ 경위서 "♠♠♠ 명의의 대출 x건, x억 x,xxx만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구입자금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본인이 이자를 대납하였음"

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 사상신협(당시 이사장 ◎◎◎)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C종합건설 등 x명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xx건, xx억 xx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20xx.xx.xx.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를 최고 xx억 xx백만원 초과(2021년말 자기자본의 x.x%)하였음

* 20xx.xx.xx. C종합건설의 명의차주 ㈜D 대출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로 x.x억원 부실 발생

** 동일인 대출한도 : Min〔2021년말 자기자본 xx억 xx백만원의 x%(xx억 xx백만원), xx억원(법인 조합원은 xx억원)〕

(1) 실차주 ㈜C종합건설 관련 대출

□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실차주 ㈜C종합건설(대표 ♤♤♤)에 대하여 페이퍼컴퍼니 ㈜D(대표 ♧♧♧[♤♤♤의 처], 20xx.xx.xx 설립)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x건, xx억 xx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최고 xx억 xx백만원 초과(2019년말 자기자본의 x.x%)하였음

⑵ 실차주 ♣♣♣ 관련 대출

□ 실차주 ♣♣♣에 대하여 대출취급일(20xx.xx.xx.) 직전에 설립한 ㈜F(대표 ♣♣♣, 20xx.xx.xx 설립) 명의를 이용하여 보통대출 x건, xx억 xx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xx억 xx백만원 초과(20xx년말 자기자본의 x.x%)하였음

⑶ 실차주 ◈◈◈ 관련 대출

□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실차주 ◈◈◈에 대하여 본인 및 ㈜E(대표 ◈◈◈, 20xx.xx.xx 설립) 명의를 이용하여 보통대출 x건, xx억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x억원 초과(20xx년말 자기자본의 x.x%)하였음

라.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 사상신협(당시 이사장 ◎◎◎)은 20xx년 회계연도말 결산시 부실징후*가 발생하여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정상'으로 오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x건, x억 xx백만원)하였고,

* 최근 결산일 현재 완전자본잠식, 제1·2 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고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

담보 압류 등 법적절차 진행중으로 '고정'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요주의'로 오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x건, x억 xx백만원)하였으며,

폐업으로 '고정'으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정상'으로 오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3건, 78백만원)하여

총 x억 xx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고, 동 액의 이익금을 과대계상* 하였음

* 순자본비율을 x.xx%p(부당 x.xx%→정당 x.xx%) 과대 산정

※ 분식규모비율(x.x배) = x억xx백만원(위반금액) ÷ {xx억x백만원(규모금액) ÷ x.x(규모조정계수)} × 100

마. 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사택·기숙사·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등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 사상신협(당시 이사장 ◎◎◎)은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단독주택 x채를 연수원 용도 명목으로 20xx.xx.xx.(경매 낙찰기일) 취득*(x억원)한 후 검사착수일(20xx.xx.xx.) 현재까지 동 부동산을 연수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

* 20xx.xx.xx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취등록세(x.x억원)를 납부하였음

4. 근거법규

□ (조치이유 가)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 (조치이유 나)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 방법기준」 제14조 등

□ (조치이유 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2021.1.13. 개정 前)

□ (조치이유 라)「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제83조의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등

□ (조치이유 마)「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8조 등